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263

발의연월일: 2022. 7. 1.

발 의 자:소병훈·김두관·김영호

서영교 · 안규백 · 양향자

유정주 • 윤관석 • 윤미향

임종성 · 정성호 · 정태호

주철현 · 최종윤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·홍보·연구·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,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 설치·운영하고 있음.

그런데,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의 예방뿐만 아니라 이들의 실질적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역시 중요하며,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경우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·시행을 규정하고,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을 규정하는 등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

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·홍보·연구·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16조제1항).
- 나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후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지원,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 록 함(안 제32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중 "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"를 "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"로 한다.

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의3(자립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8세 이후 청소년쉼 터를 퇴소하는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.

- 1. 자립에 필요한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지원
- 2.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
- 3.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
- 4.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
- 5.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,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	제16조(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
지원)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	지원) ①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	
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	- <u>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</u>
한 교육·홍보·연구·조사 등 각	
종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	
다.	
<u><신 설></u>	제32조의3(자립지원) ① 국가 및
	지방자치단체는 18세 이후 청
	소년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이
	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
	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
	있다.
	1. 자립에 필요한 주거·생활·교
	육·취업 등의 지원
	2.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
	및 관리 지원
	3.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
	<u>구</u>
	4.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
	5.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
	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
	<u>히</u>

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
절차와 방법, 지원이 필요한 청
소년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
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